

##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4.10]  
(제정) 2023.04.10 조례 제190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정책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8581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[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](#)」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위기가구”라 함은 경제적,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.
- “복지사각지대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- “사회보장”이란 「[사회보장기본법](#)」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.
- “사회보장급여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[사회보장기본법](#)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, 현물,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.
- “민관협력”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발굴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

- 실직,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질병,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- 고독사 위험, 단전·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-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
**제5조(신고의무 등)** ① 누구든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대상자 관리 및 지원)**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.

**제7조(민관협력)** ① 시장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「[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](#)」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
2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
3.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

**제9조(정보의 보호)**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**부칙 (2023. 4. 10. 조례 제1902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--